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4
----------	------

발의연월일 : 2018. 7. .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도일용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8. 2. 20 일부개정)의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의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는 설치대상에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2018. 3. 26 일부개정)에 따른 달성군 의원정수가 10명으로 확정되고 별표 3 제1호의 실·국 설치기준에 부합함.
- 이에 따라, 달성군의회는 내부적 자치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민참여와 민주성을 강화하여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또한 제8대 달성군의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의회 사무기구 규모 확대를 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
- 사무기구 부서장을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격상
- 사무기구를 조정함에 따라 다른 규칙의 조문 등 기타 불합리한 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준장”을 “분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 의회사무과</u> <u>장</u> 과 직원(이하 사무직원 이라 한다) 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의회사무국</u> <u>장</u> ----- ----- -----.
제2조(하부조직) 의회업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u>사무과장</u> 및 전 문위원을 둔다.	제2조(하부조직) ----- ----- <u>사무국장</u> ----- -----.
제3조(사무과장) ① <u>의회사무과장</u> 은 지 <u>방행정사무관</u> 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u>의회사무국장</u> 은 지 <u>방서기관</u> -----.
② <u>의회사무과</u> 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u>준장</u> 한다.	② <u>의회사무국장</u> 은----- -- <u>분장</u> ---.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u>지</u> <u>방행정사무관</u> 으로 보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 ----- <u>지</u> <u>방행정사무관</u> 과 <u>지방행정주사로</u>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등(발췌)

□ 지방자치법 제90조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8. 2. 20.>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u>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u>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 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 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별표 3] <개정 2018. 2. 2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구 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중간생략		중간생략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구·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010.2.11., 2014.2.24., 2018. 3. 26.>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제2조 관련)

구 분 구·군별	의 원 정 수		
	계	비례대표의원정수	지역선거구의원정수
계	116	14	102
중 구	7	1	6
동 구	16	2	14
서 구	11	2	9
남 구	8	1	7
북 구	20	2	18
수 성 구	20	2	18
달 서 구	24	3	21
<u>달 성 군</u>	<u>10</u>	<u>1</u>	<u>9</u>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 은 영		
도 일 용		